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60
----------	------

제출년월일 : 2022. 11.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0. 8. 12.) 개정됨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위임 사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조항 신설(안 제16조)
-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 조항 신설(안 제17조)
-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조항 신설(안 제18조)

개정조례안 : 붙임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3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4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22. 9. 15. ~ 2022. 10. 5. (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5
- 방침결정문 : 붙임6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시장(市長)은 영 제2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일정 구역에 대해 직권 또는 제17조에 따른 신청을 받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제17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다.

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⑤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한 뒤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동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제1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시장(市長)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골목형상점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1년 이상 휴업 중인 점포의 발생 등으로 인해 제16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요건 중 점포수가 미달된 경우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경제일자리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경제일자리과장 조 영 일
	담당·팀장 직위·성명	지역경제팀장 정 경 수
	담 당 자 성명·전화	문 영 진 (행정 2696)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	-----

골목형 상점가 개요	상점가명	신청인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용도지역			
	규모	토지 면적: m ² , 건물 연면적: m ² , 영업장 면적: m ² , 점포 수: 개		

시설 현황	주요시설	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편의시설	화장실: 개, 주차장: m ² , 그 밖의 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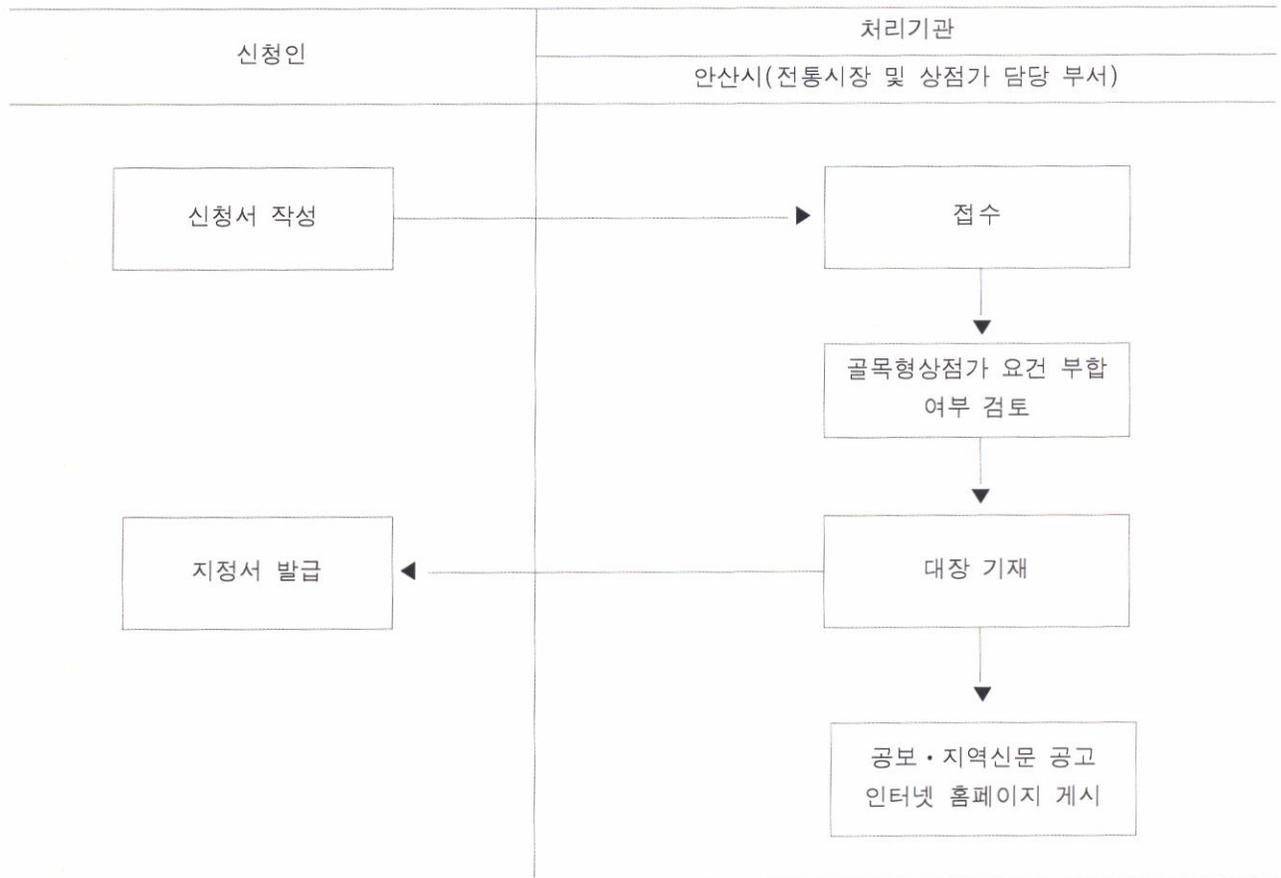
안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전체 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이상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동의서 1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 동의서 1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골목형상점가 확인서

1. 상점가명: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4. 면적: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신 설></p>	<p>제1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시장(市長)은 영 제2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일정 구역에 대해 직권 또는 제 17조에 따른 신청을 받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시장(市長)은 제17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다.</p> <p>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p> <p>④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p> <p>⑤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1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p>

<신 설>

작성한 뒤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동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제1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시장(市長)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골목형상점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1년 이상 휴업 중인 점포의 발생 등으로 인해 제16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요건 중 점포수

<신 설>

가 미달된 경우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기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 뒤쪽의 처리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책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격자 있습니다. (일괄)

신청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기관	신청인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요	용도지역		
규모	토지 면적: m ²	건물 연면적: m ²	영업장 면적: m ² , 점포 수: 개

시설 현황	주요시설	건축물: 을 등, 을 등, 을 등
	편의시설	화장실: 개, 주차장: m ² , 그 밖의 시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 및 「인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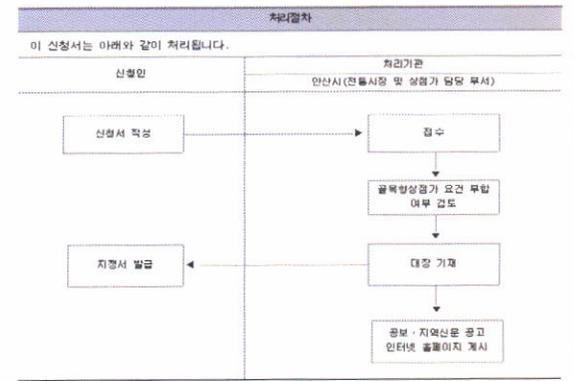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전체 상인(상시 영업을 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영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동의를 얻은 토지소유자의 20%면적의 범위)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여) 한다) 동의서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서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6.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 상인의 영부 1부. 	수수로 없음
------	--	-----------

210mm×297mm(약 남지 10g/매)

후보



<신 설>

[별첨 제1호(서식)]

제 호

골목형상점가 확인서

1. 상점가명: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4. 면적: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

직인

210x297mm(4삼지 850/8)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9-60호
----------	--------

제안년월일 : 2022. 12. 1.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수정이유

-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에 있어 과도한 행정규제 사항을 개정하여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 골목형 상점가 지정 취소 절차의 형평성,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주요골자

-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시 구비 서류 완화 (안 제17조)
- 골목형 상점가 지정 취소 사유에 대한 단서 조항 삭제 (안 제18조)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4호를 제2호로 한다.

안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	-----

골목형 상점가 개요	상점가명	신청인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용도지역	
	규모	토지 면적: m ² , 건물 연면적: m ² , 영업장 면적: m ² , 점포 수: 개

시설 현황	주요시설	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편의시설	화장실: 개, 주차장: m ² , 그 밖의 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전체 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이상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삭제> <삭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현 행	개정안	수정안
	<p>소) ① 시장(市長)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골목형 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p> <p>2. 골목형상점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p> <p>3. 1년 이상 휴업 중인 점포의 발생 등으로 인해 제16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요건 중 점포수가 미달된 경우</p> <p>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소) ① ----- ----- ----- ----- ----- . <단서 삭제></p> <p>1.~3.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	-----	-----

<신 설>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 본쪽의 서식별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이 지적 가능합니다. (단위:)

신청번호	접수일	제정기간	14일

신청가명	신청인 성명
소유지	전화번호
골목형상점가 개요	공동지역
규모	표지 면적:㎡, 건물 면적:㎡, 영입면적:㎡, 영토 수:개

사실 현황	주요시설: 건축물:층, 동:층, 동:층, 동:층
면적사항	화장실:개, 주차장:㎡, 그 밖의 시설:

「건물시법」 및 「상업가 육성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안산시 건물시법」 및 「상업가 육성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청 귀하

첨부서류 1. 골목형상점가 지정용 영입권: 구역 전체 영입권(영입권) 또는 영입권 1부를 기본으로 영입권 10% 이상 영입권(영입권) 보유 1부. 2. 골목형상점가 지정용 영입권: 구역 전체 영입권(영입권) 또는 영입권 10% 이상 영입권(영입권) 보유 1부. 3. 골목형상점가 지정용 영입권: 구역 전체 영입권(영입권) 또는 영입권 10% 이상 영입권 1부. 4. 골목형상점가 지정용 영입권: 구역 전체 영입권(영입권) 또는 영입권 10% 이상 영입권 1부. 5. 골목형상점가 지정용 영입권: 구역 전체 영입권(영입권) 또는 영입권 10% 이상 영입권 1부. 6. 골목형상점가 지정용 영입권: 구역 전체 영입권(영입권) 또는 영입권 10% 이상 영입권 1부.	수수료 없음
---	-----------

2022-02-28(개정) 2페이지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 본쪽의 서식별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이 지적 가능합니다. (단위:)

신청번호	접수일	제정기간	14일

신청가명	신청인 성명
소유지	전화번호
골목형상점가 개요	공동지역
규모	표지 면적:㎡, 건물 면적:㎡, 영입면적:㎡, 영토 수:개

사실 현황	주요시설: 건축물:층, 동:층, 동:층, 동:층
면적사항	화장실:개, 주차장:㎡, 그 밖의 시설:

「건물시법」 및 「상업가 육성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안산시 건물시법」 및 「상업가 육성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청 귀하

첨부서류 1. 골목형상점가 지정용 영입권: 구역 전체 영입권(영입권) 또는 영입권 10% 이상 영입권(영입권) 보유 1부. 2. 골목형상점가 지정용 영입권: 구역 전체 영입권(영입권) 또는 영입권 10% 이상 영입권(영입권) 보유 1부. 3. 골목형상점가 지정용 영입권: 구역 전체 영입권(영입권) 또는 영입권 10% 이상 영입권 1부. 4. 골목형상점가 지정용 영입권: 구역 전체 영입권(영입권) 또는 영입권 10% 이상 영입권 1부.	수수료 없음
--	-----------

2022-02-28(개정) 2페이지